

1. 개정이유

현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수행한 검사 조치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조치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

따라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의 검사지적 방향, 제재조치 내역 등을 여타 금융회사등이 확인할 수 없어 자발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, 동일한 내용의 법 위반·제재사례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함

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평판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검사수탁기관의 장과 합의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제3절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)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 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검사결과 조치내용(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)을 최종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 다만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금융회사등의 영업상 비밀 등 제재대상자 또는 제3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28조의2(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)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검사결과 조치내용(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)을 최종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 다만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금융회사등의 영업상 비밀 등 제재대상자 또는 제3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